성주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의 안 번 호	

제출일자 : 2019년 월 일 제 출 자 : 성 주 군 수

1. 제정이유

○「농촌진흥법」제2조에 따라 농업의 발전과 변화를 선도하는 미래 성주농업을 이끌어 갈 유능한 농업경영인 양성과 농업분야에 대한 이론의 체계화로 농산물 고부가가치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성주군 농업인대학을 설치하고,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 (안 제1조)

나. 조직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3조)

다.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4조)

라. 교육시간 및 과정편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6조)

마. 입학자격, 수료기준, 교육점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9조～제14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농촌진흥법」 제2조 4항, 제19조, 제21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성별영향평가 분석 : 해당없음〔가족지원과-13550(2019.04.08.)〕

라. 규제심사 : 해당없음〔기획감사실-3391(2019.04.08.)〕

마. 입법예고 : 2019. 4. 25. ~ 2019. 5. 16.

성주군 조례 제 호

성주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「농촌진흥법」에 따라 농업의 발전과 변화를 선도하는 미래 성주농업을 이끌어 갈 유능한 농업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성주군농업인대학을 설치하고,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설치) 성주군 농업인대학(이하 "대학"이라 한다)은 성주군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.

제3조(조직의 구성) ① 대학에는 학장, 부학장, 교학처장, 교학부서, 교수부 등을 둘 수 있다.

② 학장은 성주군수가 되고, 대학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한다.

③ 부학장은 성주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, 학장을 보좌하고 과정 전반에 관한 업무를 기획·관리한다.

④ 교학처장은 농촌지원과장이 되며, 교육과정의 편성·운영 및 지도를 담당하며, 교과과정 및 수업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담당한다.

⑤ 교학부서는 농업인육성담당 부서로 하며, 대학 운영위원회 및 자체강사 관리, 졸업생 사후관리를 담당한다.

⑥ 교수부는 연구·지도공무원, 외부교수, 선도농가 등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.

제4조(운영위원회의 설치·구성 등) 학장은 대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성주군 농업인대학 운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두며, 기본계획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·심의한다.

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(이하 "위원장"이라 한다)은 성주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

1. 당연직 위원 : 농촌지원과장, 기술개발과장

2. 위촉 위원 : 대학졸업생 중 임원 역임자, 교수진 등을 포함한 농업관련 분야 전문 인사

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5조(위원회의 운영)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6조(교육시간) 대학의 교육은 총 수업시간은 60시간 이상으로 하며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.
제7조(교육과정편성) 대학의 교육과정은 매년 1개 과정 이상으로 하며,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.
제8조(교육비) 대학에 입학한 학생에 대한 교육비는 무료로 한다. 다만, 예산이 부족한 경우 교육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수강생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.
제9조(입학자격 및 선발) ① 대학의 입학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선발한다.

1. 성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
2. 그 밖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학 자격을 얻은 사람

② 입학인원은 해당 연도 편성예산 범위에서 선발하며 대학입학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서류전형과 면접 등의 전형을 거쳐 선발한다.
제10조(제적,결석,상벌 등) ① 학과 이수 중 5회 연속 무단으로 결강할 경우 및 자퇴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제적으로 처리한다.

② 사전 통보 없이 3회 지각할 경우 1일 결석으로 본다.

③ 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된 학생, 공로가 우수한 학생은 수료식시 포상할 수 있다

④ 수업 분위기를 해치거나 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퇴학, 경고등의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.
제11조(수료) 총 수업 일 수의 100분의 75 이상을 출석하여야 수료하며, 수료생에게는 성주군농업인대학장 명의로 수료증서를 수여한다.
제12조(농업현장학습) 대학의 교육생 및 수료생은 선진 농업기술습득과 관련된 첨단농업연구시설 및 우수농장 현장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, 예산의 범위에서 참가 교육생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제13조(교육점수 인정) 대학의 수료생이 각종 농업지원사업을 신청할 경우 교육시간을 점수로 인정할 수 있다.
제14조(운영세칙)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대학운영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운영 중인 대학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·운영한 것으로 본다.

관 련 법 령

◈ 농촌진흥법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4. "교육훈련사업"이란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농업인 등의 역량개발을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.

가.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

나. 농업인, 청소년 및 이와 관련된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교육훈련

다. 농업관련 학교의 교원 및 학생에 대한 교육훈련

라. 그 밖에 교육훈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

제19조(교육훈련사업의 실시)

농촌진흥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훈련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 하여야 한다.

제21조(평생교육진흥사업 지원)

농촌진흥청장은 농업인 등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방농촌진흥기관에서 실시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